

日本 油濁손해배상제도의 운영현황

요이치 오기와

〈日本Yoshida & Partners 해사전문 변호사〉

1. 油類를 적재한 유조선으로부터의 유류유출

국제유탕배상기금(이하 “국제기금”이라 한다)은 선주의 책임제한 때문에 민사책임협약으로는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 배상한다. 피해자는 선주의 책임이 제한되더라도 국제기금으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제기금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오염손해에 대한 총청구액이 선주책임 한도를 초과하는가 및 선주책임제한이 배제되는가 하는 점이다.

1979년 日本에서 유탕사건으로 국제기금이 처음 관련되었을 때 실무적인 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단순한 절차가 채택되었다.

1) 제3자의 클레임은 합리성이 인정되고, 국제기금 및 P & I 보험자가 확인하면 訴訟節次를 거치지 않고 처리된다.

2) 국제기금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代位에 의해 그 피해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3) 선주는 국제기금이 책임제한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임제한의 訴를 제기하여야 한다.

4) 책임제한절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기금은 代位로 취득한 클레임을 제출한다.

5) 국제기금은 선주책임제한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을 때 자기의 클레임은 선주 자신의 고의 또는 과

실 때문에 제한될 수 없다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클레임제출기간이 경과하면 제한된 클레임은 확정된다.

6) 그 다음에 선주는 국제기금의 승인을 얻어 책임제한 취소의 訴를 청구하고 법원은 그 취소를 명한다. 유탕배상금 및 선주의 청소비용이 지급된 경우에는 나머지 절차는 국제기금과 P&I 보험자 사이에서 처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절차단순화의 중요한 부분은 책임제한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유탕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총배상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선주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하여는 민사책임 협약과 日本 국내법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 日本에서는 日本海上災害防止센타(Japan Maritime Disaster Prevention Centre)가 선주와의 협정에 따라 독립계약자로서 청소작업을 시행한다. 유류가 유출되면 관할지방관청은 동센타와 계약을 체결하여 청소 작업을 시행하도록 선주에게 권고한다. 선주가 그 권고에 따르지 않고 유탕손해가 발생한 경우 선주는 그 권고에 따르지 않은 데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손해는 선주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 발생한 것으로 간주 된다.

2. 油類를 적재한 유조선 이외의 선박으로부터의 유류유출

선박측의 과실로 유류가 유출되어 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 日本 국내법에 따라 선주는 오염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책임제한법에 따라 자기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 한협약에서는 책임제한기금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선주의 책임제한이 배제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러나 민사책임협약과 기금협약이 시행된 이래 대형 유탁사고의 대부분은 유조선이 아닌 선박으로부터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주로 어업활동 및 그 법률적 배경과 日本에서의 유류청소체제와 관련되어 있다.

日本의 전해안은 여러가지 종류의 어업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양식어장이 산재하고 있다. 만일 유류가 유출되어 어업지역을 오염시키게 되면 그 손해는 막대하다. 선박이 어장 가까이에 있는 해안에 침몰하여 유류가 유출된 경우 유류유출의 원인과 오염손해의 원인을 분리하여 검토해야 한다. 해양오염방지법상 유류를 유출시킨 선박의 소유자는 가능한 한 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그 선박이 유류유출을 야기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가 그 선박으로부터 유출되었다는 단순한 사실에 의거하여 발생한다. 그 선박의 선주가 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과실로 인정되어 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선박이 어업지역 부근에 침몰하거나 많은 양의 유류가 유출되어 막대한 오염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해상안보청 (*Maritime Safety Agency*)은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유류배출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根本의인 조치”를 취하도록 선주에게 경고하거나 명령한다. 이러한 경우에 선주는 선내에 연료유를 보유하고 있는 난파선을 제거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선주가 그러한 경고 또는 명령을 무시함으로써 유류가 유출되어 오염손해가 발생하면 오염손해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리고 무모하게 행한 선주의 不作爲로 오염손해가 발생한 것

으로 간주되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된다.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 한협약에서는 청소비용 및 오염손해에 관한 한 책임제한이 배제될 여지가 거의 없으며 선주가 해상보안청 (MSA)의 명령이나 권고를 무시하고 유류유출을 청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책임제한권이 상실될 위험이 있다.

3. 원인불명 油濁손해에 대한 구제기금

日本에서는 산업의 발달과 유류수입의 증가로 유류를 유출시킨 선박을 알 수 없는 유탁손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는 배상을 받지 못하는데, 이를 위해 1977년에 “不明의 선박으로부터의 유류유출에 기인한 오염손해의 구제를 위한 기금”이 설립되었다.

구제기금의 기능은 유탁손해에 대한 청소비용과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구제기금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유류소비자가 기금을 각출하고 있다.

유류유출이 발생하면 구제기금 사무국에 통지되고 즉시 조사 및 확인이 이루어진다. 해상안전부가 범인을 알지 못할 때에는 구제기금에 대하여 구제를 신청한다. 구제신청은 먼저 지역심판위원회가 검토하여 중앙심판위원회에 보고한다. 중앙심판위원회는 지방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하든가 아니면 독자적인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4. 어업손해 보상청구처리의 실제

민사책임협약 (CLC)과 국제유탁배상기금협약 (FC)의 발효 이전에는 책임한도액은 비교적 소액이었고,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어민들은 실력행사를 통해 가해 자에게 배상을 강요하였는데, 수많은 소형어선을 동원하여 항만을 봉쇄하는 등 격렬한 海上示威를 함으로써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여건에서 선주가 법정투쟁보다는 어민과 협상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지만, 어민과 선주 및 P & I클럽간에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적대감정이 상존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측이 상호이해와 신뢰구축 노력을 함으로써 이러한 적대감정은 완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어업활동과 그 소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어민은 비합리적으로 과다한 청구를 하고, 선주는 아주 단순한 백분율에 의한 삭감조치를 하는 등 구태의연한 방식이 원용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협상의 주요요소는 법적논쟁은 물론 기본적인 사실분석과 통계적 추정방법에 기초한 이론적 논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漁業損害補償請求額은 항상 과다하게 계산된다는 단순한 사고방식은 더 이상 인정될 수 없고, 증빙의무와 판례법의 경향을 유념하여 어업손해의 합리적인 산정을 하는것이 중요하다.

유탁에 의한 어업손해는 대략적으로 물리적 손해, 대체비용, 소득손실 및 어민의 청소비 등 4개 유형이 있다.

(1) 물리적 손해 : 이 유형의 피해중 가장 심각한 것은 특히 수학기의 해태양식장에 대한 오염이다. 전복, 대하, 해초(바닷말) 등의 해산물에 대한 손해도 극심하다.

(2) 대체비용 : 뱠장어 양식업자가 유류유출 때문에 치어를 잡지 못하고 외지의 稚魚商으로부터 치어를 고가로 구입하여 양식을 한 경우에, 양식업자는 소득손실을 모면했지만, 치어의 고가구입을 위해 대체비용을 지불하는 손해를 입는다.

(3) 소득손실 : 이는 유류유출로 인한 선박어업과 고정어망 어획의 중지, 어획활동의 제한, 어장의 변화 또는 양식수산물의 가격저하 등으로 인해 발생한

다. 기름유출 소문에 따른 판매가격 저하로 인한 어업손해를 인정함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손해배상청구는 흔히 수산양식과 관련해서 제기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油濁과 판매가격 저하의 인과관계 증명이 곤란하다.

어민소득은 공동판매와 자가판매 등의 상이한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얻어진다. 공동판매는 水協에 의해 행해지고 그 기록은 잘 유지되며, 특히 해태의 공동판매는 전산화되어 있고, 어민 개인별 기록과 지역단위 水協의 기록은 전산출력정보형태로 보관되어 있다. 따라서 정확한 소득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자가판매는 어민들의 魚類商과 중개인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거래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 자가판매의 목적은 소득세를 탈세하거나 어민과 구매자간의 오랜 유대를 지속하려는 것이다. 자가판매의 비중은 전체거래의 70% 정도이고, 모든 어민은 이를 행하고 있다.

법원심리과정에서 소득세 환수가 가능하나 세무서가 아닌 법원은 이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은 부담없이 실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다.

어민과의 협상은 법원이 요구하는 증빙의 정도와 관련한 사실확인과 법적이론의 양면성이 있는 이론적 협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다수의 환경오염관련 집단소송의 법원의 판례는 피해자 보호입장을 취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선주에게 비록 폭력이나 유사한 위협이 사라진다 해도 어업손해배상 협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

□ 도서안내 □

석유의 이모저모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